

북한의 사회주의상업법 분석 (I)*

-통일을 대비한 북한 상업구조의 이해-

전 우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초 록 】

북한은 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에서 법령 제5호로 사회주의상업법을 승인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상업법은 북한의 기존 민법과 더불어 상업적 관계를 일부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남한 상법학자의 입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상업법을 통하여 그 유통질서를 고찰하는 것은 북한의 경제질서를 이해하는 첩경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사회주의상업법은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이념에서 떠날 수 없다.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적 법률관에 의하면 법 자체가 독자적으로 있을 수 없고 경제관계의 종속변수에 불과하지만, 스탈린주의적 법률관에 의하면 위의 관점과는 별개로 법이 계급투쟁과 국가관리의 수단으로서 그 유용성이 인정된다.

북한에서는 자유주의 법에서와 같이 헌법->법률->명령->규칙->조례 등 법의 상하관계에 대한 규정이나 이론이 없지만, 북한헌법과의 관계에서는 헌법 자체가 북한의 체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상업법은 그 헌법의 하위에 있다. 북한에서 민법은 재산관계에 대한 민사적 규제에 관한 법이고 상법을 따로 제정하고 있지 않아 상법내용에 해당하는

* 이 논문은 북한 사회주의 상업법(1992년 제정, 1999년과 2002년, 2004년에 개정된 것)의 내용에 대한 분석을 위주로 하지만, 필요한 한도에서 우리 상법총칙편에 대한 비교검토를 하기로 한다. 그리고 지면관계상 1부와 2부로 나누어 발표한다.

것들이 일부 민법편에 수용되어 있다. 그러나, 상업법이 정하는 상사유통관계는 사회주의 경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상사법률관계를 그 직접적 대상으로 하여 물건의 제조, 판매, 운송, 여행용품에 대한 규정, 기업소, 도매소, 소매소, 도시와 농촌의 물자 교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의의의 상법(상거래)의 대상을 다수 포함하고 민법과는 별도로 형성된 상업질서의 법이다. 다만, 북한의 상업법은 상법과 동일시될 수 없고 형식적 의미의 상법이 북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 북한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오로지 투입노동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보므로 상업에서의 영리추구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대신하는 경제의 국가적 계획과 고권적 유통질서만이 존재한다. 다만, 실질적 의의의 상법의 맹아를 찾아보려는 노력은 상업법과 같은 법률의 검토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사회주의상업법이 우리 실질적 의의의 상법 대상이 되는 사항(생산, 유통, 매매, 보관, 운송 등)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사회주의 상업법의 내용 중 제1장과 제2장은 사회주의상업의 개념정의, 상품공급에서의 주문제, 수매 가공사업 강화, 봉사혁명, 상업에 대한 지도관리체계, 사회주의 상업발전의 요구에 맞는 상품유통사업, 완전한 공급제의 목표, 국제 교류와 협조, 주민들의 물질문화적 수요에 맞춘 상품의 확보·공급, 도매상업기관·기업소의 상품확보·지역간 교류, 소매상업기관·기업소에 대한 상품의 정상적 공급, 상품주문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생산과 분배·공급계획 작성, 상품공급계획에 기초한 상품공급계약과 이행, 원료기지를 기초로 한 식료품 생산, 수산물의 공급, 상비상품의 우선적 생산보장, 협동농장 결산분배시기의 집중적 상품공급, 탄광·광산 상품의 우선적 공급, 노동보호물자와 우대상품의 공급, 부식물과 어린이옷·일용 세소상품의 자체 가공사업, 여행자들을 위한 상품 확보·매매, 민수용연료의 생산·공급·수송, 일용상품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신용보증제, 상품유통에 대한 장악 지휘체계의 확립, 자연피해시 상품예비의 공급, 직매점의 기능과 의무·금지사항, 운수기관과 체신기관의 수송·송달, 상품부정유통과 직권남용행위의 금지 등이다.

주제어 : 북한의 경제질서, 실질적 의의의 상법의 대상, 상품공급에서의 주문제, 상업에 대한 지도관리체계, 상품공급계획에 기초한 상품공급계약과 이행

【차 례】

I. 서설	3. 공사법의 구별 부인
II. 북한 사회주의 상업법의 구성과 지위	4.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반영
1. 사회주의상업법의 구성	5. 공산당 결정의 사실상 우위
2. 사회주의상업법의 지위	6. 상업의 허가주의적 특징
III. 북한 사회주의 상업법의 성격	IV. 북한 사회주의 상업법의 내용분석(제1장과 제2장)
1. 상인·상행위개념의 부정	V. 결어
2. 국유화 상업형태의 원칙	

I. 서설

북한은 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에서 법령 제5호로 「사회주의상업법」을 승인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다.¹⁾ 이는 기존의 민법과 더불어 상사관계에 관한 법이라는 점에서 우리 남한 상법학의 입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때늦은 감이 있으나 남북관계의 유동적인 상황에 비추어 지금이라도 이러한 단행법을 연구분석하는 것이 향후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준비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믿는다.

북한의 사회주의 상업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그 내용을 북한의 보도자료를 직접 인용하여 소개하거나, 북한의 상업구조의 특징을 사회주의 체제의 특징과 연계하여 그 개요를 설명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북한연구의 단초를 민사법적 관점에서 논구하게 하는 것이었다. 다만, 필자는 북한의 단행법을 분석, 해석하는 연구를 하면서 이러한 시도가 북한의 현행법 실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최첩경임을 느꼈다.

우리 상법의 경우에도 상법전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 다른 어떤 상법이론보다 우리 상법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이해로 가는 것이기에 이를 북한실정법 연구에도 그대로 적용해보려는 것이다.

북한의 「사회주의상업법」은 우리 상법에 대응하는 내용을 일부 지닐 뿐 상법체계를 갖추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명칭과는 달리 내용은 우리 상법과 천양지차이다. 근

1) 북한은 사회주의 상업법에 대해 '민주조선'이라는 기관지에서 발표하여 소개한 적이 있다(법규해설: "사회주의상업법에 대하여", 민주조선, 평양: 내각편집위원회, 1992.5.8-6월 9일까지의 발표문).

본적으로 우리와 다른 법체계, 법관념을 지닌 북한의 경우를 우리 법과 대비하여 분류하는 것 자체가 오류일 것이다. 우리 상법이 상인이나 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그의 영업활동을 규율하려는 것임에 반하여 북한의 상업법은 국가가 고권적으로 주민들의 필요품을 공급함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의 「사회주의상업법」을 통하여 유통질서를 고찰하는 것은 우리 상업, 상법과의 차이를 대비시키는 가장 유효적절한 것 중 하나임에는 분명하다. 특히 북한의 상업법이 지닌 의미내용을 우리 상법의 체계와 내용에 비추어 분석함으로써 최소한 우리와 대비되는 유통구조의 특색을 충분히 인식하게 할 수는 있다고 본다.

그런데, 북한의 실정법 해석에 참고할만한 자료가 풍부하지 못하고 북한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이해가 밑바탕이 되어야만 충분한 해석이 됨에도 부족한 점이 있음을 밝혀둔다.

II. 북한 사회주의상업법의 구성과 지위

1. 「사회주의상업법」의 구성

「사회주의상업법」은 총 9장 9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사회주의 상업의 기본(제1조-제8조), 제2장 상품공급(제9조-제29조), 제3장 구매(제30조-제40조), 제4장 사회급양(제41조-제49조), 제5장 편의봉사(제50조-제56조), 제6장 상품보관관리(제60조-제64조), 제7장 상업의 문화성·봉사성(제65조-제72조), 제8장 상업시설의 현대화, 상업경영의 과학화·합리화(제73조-제85조), 제9장 사회주의 상업에 대한 지도통제(제86조-제96조)로 되어 있다.

2. 「사회주의상업법」의 지위

북한에서 「사회주의상업법」이 어떠한 지위를 지니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를 법과 정치의 관계, 상업법의 북한헌법과의 관계, 상업법의 북한민법과의 관계, 상업법과 상법의 동일성 여부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1) 「사회주의상업법」의 정치와의 관계

북한의 상업법을 이해하려면 우리의 상법총칙과 상행위편처럼 상인과 상행위 자체만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 특히 정치적인 구조를 잘 이해하는 바탕위에 서야 한다. 북한의 상업법도 북한체제의 법에 대한 정치적 태도에 따라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법치주의 실현 수단으로서의 법이 아니라 정치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법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성격과 스탈린주의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사회주의상업법만에 해당하는 독자적 특색은 아니지만, 양자의 구분설명이 이 상업법을 이해함에도 유용할 것이다.

①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적 법률관에 따른 상업법의 지위

북한은 정권수립 당시부터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사상을 근본바탕으로 받아들였다.²⁾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의하면 법은 사회내에서 상부구조를 형성하는 요소로서 하부구조인 경제관계의 발전에 따라 생성하고 변화하고 소멸한다. 그리하여 법 자체가 독자적으로 있을 수 없고 경제관계의 종속변수에 불과하게 된다.³⁾ 그리하여 기존 자본주의사회의 법에 대해서는 지배계급에 유리한 생산관계와 사회질서를 유지·공고화하기 위하여 국가가 제정·공포하고 국가의 경제력에 의하여 그 준수가 담보되는 행위준칙의 총체로 본다.⁴⁾ 다만, 북한법은 같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법이론을 받아들이면서도 구 소련의 법학계와는 달리 법학과 법의 체계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거치지 못하였고 해방직후 공산주의 이념과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기계적이고 단순하게 결정되어 버렸다.⁵⁾

② 스탈린주의적 법률관에 따른 상업법의 지위(유용한 유통질서로서의 법)

-
- 2)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평양: 평양종합인쇄공장), 1973, 463면(“사회주의법은 맑스-레닌주의의 당의 로선과 정책을 옹호하고 보위하며 그의 정확한 관철을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
 - 3) 사회과학출판사, 철학사전, 평양: 평양종합인쇄공장, 1985, 272면(“법은 사회경제제도의 반영으로서 일정한 사회경제제도를 떠난 법이란 있을 수 없으며 경제제도가 변하면 법도 변한다”).
 - 4)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법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276면.
 - 5) 그 구체적 사정 설명으로는 첫째, 북한의 경우 각 법부문을 총괄할만한 기본적 법령의 제정이 미미했던 점, 둘째, 북한의 사회현실에 비추어 법에 대한 가치관이 완숙하게 조성되지 못했던 점, 셋째, 대외의 변화물결과 내부이념에 따른 법의 체계적 분류 및 정비에 혼선을 빚었던 점 등을 드는 견해가 있다(최달근, “북한법의 체계와 특색의 구명을 위하여,” 북한법의 체계와 특색, 서울: 세종연구소, 1994, 8면). 한편, 북한법은 법치주의보다는 덕치주의, 법과 법률가에 대한 불신, 조정에 의한 분쟁의 해소 등 극동법적 요소가 많이 반영되었다고 보는 견해(大木雅夫, 比較法講義, 東京: 東京大出版會, 1992, 141면)도 있다. 그리고, 아무리 북한이 사회주의법제를 고집한다고 하더라도 고조선으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말할 수 없을 것이고(현승중, 비교법입문, 박영사, 1972, 101면), 그리하여 북한의 법은 전통을 거부하는 것 같으면서도 오히려 과거의 범주에서 해방될 수 없는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는 시각(최종고, 한국법과 세계법, 교육과학사, 1989, 25면)들도 두 번째 견해와 부합한다. 어떤 시각을 통하여 북한법을 이해하든 북한법이 한편으로 구 소련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해방직후 근대시민사회로 발전하지 못한 북한사정을 반영하였음에 공감한다. 이러한 사정은 그 이후 김일성 개인의 신격화(주체사상의 광범한 신봉)로 전개되는 정신문화적 자양분이 되었다고 본다.

위의 관점과는 별개로 북한법은 스탈린 시대 구소련의 법률관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는 북한이 1948년 헌법을 제정하면서 스탈린 시대의 민주적 특성을 모두 계승하였음을 자랑한 점이나,⁶⁾ 법이 계급투쟁과 국가관리의 무기이고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무기로 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점에서도⁷⁾ 표현된다.

스탈린의 국가관·법률관에 의하면 국가는 비록 상부구조로서 경제적 생산관리라는 하부구조를 반영하고 있으나, 단순히 하부구조를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부구조 자체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도 있는 주도적 상부구조로 그 유용성이 새롭게 인정된다. 또, 자본주의 국가나 국내 반항세력의 공격으로부터 혁명의 성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의 강화(법률의 제정 포함)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에 따라서 북한의 법도 '보호적 상부구조'로서 사회주의 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도 구조 그 효용성이 인정되고 있다. 특히 반혁명세력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실현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곧 법이라고 하여 새로운 긍정이 가능하게 된다.⁸⁾

그리하여 구체적으로 상업법은 경제활동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유용하게 사용된다. 국가는 모든 경제활동에 대해 계획과 집행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사회주의상업법」은 바로 이러한 국가의 경제조직적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다.⁹⁾ 나아가 북한사회에서 법은 모든 주민을 공산화, 혁명화하는 수단 즉 공산주의적 신인간으로 개조하는 방안의 하나로도 인식된다. 즉, 모든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여 혁명화, 노동계급화하여 온갖 계급적 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데 법이 활용될 수 있다고 한다.¹⁰⁾ 「사회주의상업법」도 예외가 아니다.

(2) 「사회주의상업법」의 북한헌법과의 관계

북한에서는 자유주의 법에서와 같이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등 법의 상하관계에 대한 규정이나 이론이 없지만, 헌법과의 관계에서는 그 헌법이 북한의 체제내용을 근본적

6) 강구진, “북한법에 대한 소련 및 중공의 영향”, 국토통일, 서울: 국토통일원, 1975.11, 28면.

7) 조선로동당출판사편, 김일성저작집(2권), 1979, 142면.

8) 앞의 책(정치사전), 463면.; 김일성도 법의 기능에 대해 “우리의 법은 사회주의 사회의 법이며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우리 국가주권의 법입니다. 우리의 법이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와 사회주의 전취물을 지키는 무기로 되어야 하며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무기로 되어야 할 것은 명백합니다.”라고 하여 이른바 법의 역할과 효용을 인정하고 있는 것(앞의 책(김일성저작집(2권)), 142면)은 이러한 사상 때문이다.

9) 앞의 책(철학사전), 272면 참조.

10) 앞의 책(정치사전), 463면.

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상업법도 헌법의 하위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구체적으로 북한헌법은 상업질서에 관하여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하여(북한헌법 제19조), 생산수단은 국가와 협동단체만이 소유하며(동 헌법 제20조), 중요공장과 기업소, 항만, 은행, 교통운수와 체신기관은 국가만이 소유하고(동 헌법 제21조 제3문) 중소기업과 기업소는 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으며(동 헌법 제22조 제2문) 사적 소유보다 국가 소유(인민적 소유)를 항상 우선하여 보호하고 있다(동 헌법 제21조 제4문)는 등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¹¹⁾ 다만, 북한의 헌법과 법률의 상하관계가 우리처럼 위헌법률심사제도에 의해 담보되는 것이 아니고, 헌법 자체도 당의 결정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최고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사회주의상업법」의 북한민법과의 관계

북한에서 민법은 재산관계에 대한 민사적 규제에 관한 법이다(북한민법 제1조). 그에 따라 민법이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제1편 제2장), 민사법률행위(제1편 제3장), 채권채무제도(제3편), 민사책임과 시효제도(제4편)를 규정하고 있고 상법을 따로 제정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 의의의 상법이 민법편에 일부 수용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민법 자체가 실질적 의의의 상법을 포함한다는 관념이 없고 계약법 등 규정이 민법에 있을 뿐이다.¹²⁾ 구체적으로 북한 민법은 제2조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 사이에 서로 같은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재산관계를 규제한다’고 하고, 제11조는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로는 독립적인 경비예산이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그리고, 합영기업, 합작기업, 기타 다른 나라의 법인: 1993년 추가)이 된다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업법이 정하는 상사유통관계는 사회주의 경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상사법률관계를 그 직접적 대상으로 하여 물건의 제조, 판매, 운송, 여행용품에 대한 규정, 기업소, 도매소, 소매소, 도시와 농촌의 물자 교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의의의 상법(상거래)의 대상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민법과는 별도로 형성된 상업질서의 법으로 해석된다.

11) 그러나, 기업, 영업의 자유활동에 관한 근거규정은 없다.

12) 그리하여 이를 두고 ‘民法의 商化’라고 할 수도 없게 된다. ‘民法의 商化’가 되려면 민법의 내용이 시대와 더불어 상법에 접근하여 하나로 합쳐져야 하는데(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09, 14면), 북한 민법의 경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더욱이 상법과 합쳐진다는 관념도 없었기 때문이다.

(4) 「사회주의상업법」의 상법과의 동일성 여부(상법의 존재여부)

북한의 상업법이 상법과 동일시될 수 있는가? 나아가 북한에도 상법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가? 간단히 답하면 북한의 상업법은 상법과 동일시될 수 없다.¹³⁾ 또, 상업법이 형식적 의의의 상법이 될 수 없다는 것도 그 명칭 자체에서부터 명백하다(형식적 의의의 상법의 부존재).¹⁴⁾ 이는 북한의 사회주의가 상법을 정의할 때, 상법이란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윤추구의 목적에 알맞게 상업거래에 관한 관계를 규정한 법, 즉 계급법이라고 하므로¹⁵⁾ 상법이라는 명칭의 법률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북한에서는 상사관계의 법률문제를 민법의 규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실정이다.

다만, 북한에도 실질적 의의의 상법 즉 우리처럼 상인이나 기업의 생활관계에 관한 법이 존재하는가, 특히 사회주의 상업법이 그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의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i) 민법부문에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 상사에 속하는 법률관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민법이 상법 및 경제법의 구실도 하고 독자의 상법분야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입장¹⁶⁾과, 그 반면 (ii) 상업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이상 상법 영역의 존재를 긍정할 수 있다고 보고 북한법의 한 분야로서 상법분야를 인정하는 입장¹⁷⁾이 각각 있다.

생각건대, 북한의 경우 상거래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유산계급을 적대시하며 유산계급의 토대가 되는 상행위, 회사조직을 부정하고, 경제적 가치는 투입노동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보므로 경제의 국가적 계획과 고권적 유통질서만이 존재한다. 또, 사적소유가 계급사회와 착취사회를 특징짓는 가장 본질적인 표징으로 받아들여지므로 그 연장선상에서 상인, 상행위를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허용하기 어렵다. 북한이 조선말 대사전에서 상법을 ‘자본주의국가에서 리윤추구의 목적에 알맞게 상업거래에 관한 관계를 규정한 법’이라고 개념정의하고 있는 것¹⁸⁾도 같은 맥락이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와 같은 상인법 내지 기업법으로서의 상법은 북한에 있을 수 없고 현실적으로도 없다(실질적 의의의 상법

13) 같은 취지: 권재열, “남북한 통일상사법 정립방향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6집, 2000.10, 167면.

14) 북한에서는 2004년 이전에 체계를 갖춘 법령집 하나도 출판하지 않았었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의 단행법이 제정된 적은 있으나 그 밖의 영역에서는 거의 통일된 단행법조차 구비되지 않았다(정경모·최달곤 편, 북한법령집(제1권), 서울: 대륙연구소, 1990, 11면, 14면.) 다만, 2004년에 이르러 법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법률출판사, 2004.8)을 출간하였으나 이는 북한주민통제 강화용으로 이해되고 있다.

15) 사회과학원 어학연구소, 조선말대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1706면.

16) 최달곤, “북한법의 체계와 법원”, 북한법령집 제1권, 대륙연구소, 1990, 15면.

17) 최종고, “북한법의 구조와 사상”, 북한연구, 1990 가을호, 36, 39면.; 최종고, “북한법의 구조와 사상-주체법 사상과 사회주의 법률생활”, 저스티스 제25권 제1호, 서울: 한국법학원, 1992, 104면.

18) 앞의 책(조선말대사전), 1706면.

부존재)¹⁹⁾ 다만, 외자유치를 위한 필요상 경제법규에서 합영회사, 합작회사, 외국회사 등을 허용할 따름이어서 상사법률관계는 민법이나 대외 경제법령 등에 많이 분산되어 있다.

다만, 우리의 연구대상으로서 실질적 의의의 상법 맹아를 찾아보려는 노력은 상업법과 같은 법률의 검토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사회주의상업법이 우리 실질적 의의의 상법 대상이 되는 사항(생산, 유통, 매매, 보관, 운송 등)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서 그 맹아에 주목한다. 향후 북한에서 상거래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기업의 형태가 태동한다면 현재 북한의 사회주의 상업법에 규정된 요소들(기업소, 도매소, 소매소 등)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법과의 관련에서 연구하는 것이 요청된다.

Ⅲ. 「사회주의상업법」의 성격

북한의 「사회주의상업법」의 성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상인·상행위개념의 부정

노동에 의하지 않은 것에는 경제적 가치가 부여될 수 없다고 보는 시각에서는 상행위를 긍정할 수 없다. 그 연장선상에서 기업도 인정하기 어렵다. 북한의 「사회주의상업법」에는 상인과 상행위라는 용어가 전혀 없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북한에서 일반인과 구별되는 상인의 개념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당연상인(상법 제4조), 의제상인(상법 제5조)과 같은 개념이 아직은 통용되기 어렵다.

해방직후에는 상인, 상행위의 개념이 일정 부분 인정되고 있었다. 즉, 북한에서 상업국 임시행정조치 요강(1945.12.29 상업국포고 제1호), 상업기관에 관한 명령(1946.4.13 임시인민위원회 상업국포고 제2호), 동 명령에 관한 시행세칙(1946.6.15 상업국포고 제3호), 상사·회사 설립허가 방침에 관한 건 내시(1946.7.4 상업국지령 제449호), 개인소유권을 보호하며 산업 및 상업활동에 있어서 개인의 창발성을 발휘시키기 위한 대책에 관한 결정서(1946.10.4 인민위원회결정 제91호) 등에 의해서 해방 직후 1947년 초기까지는 개인상인,

19) 같은 취지: 법무부,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I), 법무자료 제166집, 1992, 27-28면; 법무부,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III)-상사·경제·노동관계법, 법무자료 제216집(1997), 40-41면.

회사, 상업등기와 같은 제도가 인정되고 있었다. 1948년의 북한헌법 제19조도 ‘생산수단, 중소기업, 기업소, 중소기업관, 원료, 제조품 등에 대한 개인소유’를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1958년을 기점으로 이러한 최소한의 상인, 상행위 규정도 폐지되었다.²⁰⁾

다만 최근에 이르러 외국기업과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북한은 경제에 관한 이러한 기본원칙의 예외로서 각종 대외경제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현재 북한에서는 합영회사, 합작회사, 외국인투자회사 등이 인정되고 있고 이는 실물경제 뿐만 아니라 화폐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분야에까지 확장되었다. 다만, 이러한 회사는 북한에서 민법상 법인으로 취급되고 있을 뿐이다.²¹⁾

2. 국유화 상업형태의 원칙

북한의 소유권에 대한 이해는 북한의 「사회주의상업법」을 해석함에 중요한 열쇠가 된다. 북한은 1958년 이후 소유형태와 상업형태가 전부 국유화 내지 사회주의적 소유를 기초로 하여 그 이후에는 개인 상공업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²²⁾

1945년 11월에 북한은 ‘북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1945.11.15. 사법국포고 제2호)에서 1945년 8월 15일 조선에서 그 효력을 상실할 법령 중 성질상 조선 신국가건설 및 조선 고유의 민정과 조리에 부합하지 않는 법령 및 조항을 제외하고 그 밖의 법령은 신법령을 발표할 때까지 각각 그 효력을 존속시킨다고 하였다. 해방직후 북한은 일본인 및 조선민족 반역자의 소유로 되어 있던 산업, 교통운수, 체신, 은행기관부터 우선 국유화하였다.²³⁾ 그 후 1958년 8월에는 모든 상업부문에서 개인소유가 전부 폐지됨으로써 상업은 완전히 중앙당국에 의하여 관리·운영되고 있다.

생산물에 대한 소유형태가 전인민적 소유(국유), 협동적 소유(공유), 개인적 소유 등으로 분화되어 있으므로²⁴⁾ 상업형태도 그 소유형태에 따라 국영상업과 협동단체상업 그리고 농

20) 앞의 책(김일성저작집(26권)), 1984, 254면: “1957-1958년에 이르러 우리나라에서 자본주의적 산업은 없어졌습니다. 그 때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주의 상업체계가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21) 법무부, 앞의 책(북한법의 체계적 고찰(III)), 47면.

22) 이태욱, 북한경제와 주민생활(북한의 오늘 2), 공보처, 1993, 11-17면.

23) 다만, 이 때까지만 해도 개인소유가 일부 긍정되고 있었다. 그 이후 일정한 시간 경과 후에는 모든 산업의 국유화가 진행되고 개인 소유영역은 일부 소비품에만 제한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 과정에서 각종 경제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는데, 남한법과 달리 법령의 개정·폐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부칙을 따로 두지 않는 등 비밀주의와 행정편의주의에 의하고 있다(같은 취지: 법무부, 앞의 책(북한법의 체계적 고찰(III))-상사·경제·노동관계법, 법무자료 제216집, 1997, 44면).

24) 노재봉 등, 북한경제백서, 2002, 68면.

민시장상업 등 세가지로 분류될 수는 있지만,²⁵⁾ 국유화 상업형태(국영상업)가 원칙적이다.

국영상업은 전인민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가장 높은 형태의 상업으로서 상품유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가의 계획적 관리·운영하에 있다.²⁶⁾ 협동단체상업은 협동적 소유에 기초하고 협동단체들이 관리·운영한다. 협동단체상업은 처음에는 농민들로 조직된 소비조합이었으나 1959년부터 협동단체상업형태로 개편되었다.²⁷⁾ 당시 소비조합은 농민들에 대한 상품공급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민들이 돈을 모아 조직한 유통분야의 협동경리였다. 이 소비조합은 농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소금, 천, 신발, 성냥 등 공업상품을 수매하여 도시에 팔았으며 이러한 상업활동을 통하여 얻은 이익금은 출처뭇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분배하는 조직이었으므로²⁸⁾ 후에 협동단체상업으로 전환하기에 용이하였던 것이다.

그 반면 북한에서도 국유화의 영역이 완전히 미치지 못하는 대표적인 경우로서 농민시장이 있다. 이는 1958년 8월 내각결정 140호에 의거해 이전에 있었던 농촌시장이 폐지되고 대신 창설된 것이다. 국영 및 협동단체가 모든 유통체계를 총괄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이 농민시장에서 협동농장이나 협동농민들의 개인부업경리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일부를 농민들이 다른 사람에서 직접 파는 것이다.²⁹⁾ 이 농민시장에는 협동경리와 개인부업경리가 있으며, 북한사회에 있어서 개인적 상업의 성격이 강한 상업의 한 형태로 존재한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 농민시장을 '자본주의적 잔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뒤떨어진 상업형태'로 인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농민시장에서는 가격이 국가에 의해 계획되지 않고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정해지며 따라서 가치법칙이 어느 정도 맹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 때문이다. 또, 농민시장에서의 상품거래가 전문적인 상업기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기도 하다.³⁰⁾ 그리하여 북한에서는 향후 소비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이 발전하고 협동적 소유가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되어 사회주의가 완성되면 농민시장상업은 소멸되어야 하는 과도적인 상업형태로 보고 있다.³¹⁾

25)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경제사전(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59면.

26) 그리하여 국영기업소는 경영상의 상대적 독자성을 인정받고 있다(김일성 저작집(23권), 458면: 여기서의 '상대적 독자성'이란 경영실적을 제고시키기 위해 중앙당국이 하달한 계획과 방침의 범위 내에서 독자적 영역을 인정받는 것을 말한다.)

27) 앞의 책(김일성저작집(2)), 588면.

28) 앞의 책(경제사전(2)), 588면.

29) 앞의 책(김일성저작집(23권)), 465면.

30) 앞의 책(경제사전(2)), 367-368면.

31) 앞의 책(경제사전(2)), 59면.

3. 공사법의 구별부인 체계

사회주의법은 공법과 사법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사회에 있어서 모든 갈등과 모순의 온상이고 자본주의적 폐단의 근본원인이라고 보아 모든 생산수단을 국유화 내지 준국유화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산수단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사회에서 공법과 사법의 구분은 무의미하게 된다.³²⁾ 북한에서도 공법과 사법의 구분이 없다. 법은 사회경제제도의 한 표현방식일 뿐이라고 인식하므로,³³⁾ 소유권제도와 경제질서 자체가 국가의 행정적 행위가 주축이 되는 공법위주로 형성되게 된다. 그리하여 북한은 법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1) 헌법, (2) 국가·경제기관 강화를 위한 법, (3) 사상혁명의 심화를 위한 법, (4) 기술혁명의 심화를 위한 법, (5) 문화혁명의 심화를 위한 법, (6) 인민생활의 균형발전을 위한 법, (7) 부문법전 등의 방법만으로 구분하고 있다.³⁴⁾

심지어 계약법 등을 규정한 민법에서조차 국가의 개입여지가 많아서 공법적 요소가 상당하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상업법도 사법이 아니라 공법이고 유통질서를 규제하는 공행정법의 하나로 되어있다. 북한에서는 계약도 재산거래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권리주체 사이의 법률행위로 이해하지 않고 국가경제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수단 또는 절차로만 보기 때문에 상업법에 규정된 계약이라도 이러한 고려에서 해석되어야 한다.³⁵⁾

4.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반영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이므로 경제제도는 그에 따라 계획경제를 원칙으로 한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란 생산수단의 국유화 또는 사회화로서 중앙과 지방의 행정주체가 사회적 생산물의 생산과 분배, 소비의 대부분을 단일국가계획에 의해서 결정하는 경제체제로 정의될 수 있다.³⁶⁾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계획에 의해 공급량과 그에 따른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경쟁적 시장조건도 존재하지 않는다.³⁷⁾

북한은 그 경제체제에 대해 설명하기를, “유일적인 국가계획에 따라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 경제로서 (1) 국가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지도되는 고도로 조직화

32) 법무부, 앞의 책(북한법의 체계적 고찰(I)), 8면.

33) 앞의 책(김일성 저작집(12권)), 218면(“법은 사회경제제도의 반영이며 정치의 한 표현형식입니다”).

34) 홍극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제정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6, 224-287면.

35) 법무부, 앞의 책(북한법의 체계적 고찰(III)), 47면.

36)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편, 신경제학사전, 대학당, 1976, 173면.

37) 앞의 책(경제사전(2)), 120면.

되고 중앙집권화된 경제이고, (2) 객관적 경제법칙의 리용에 기초하여 과학적으로, 의식적으로 조직되는 경제"라고 한다.³⁸⁾ 그리하여 북한은 생산수단의 국유화, 또는 사회화로서 중앙·지방정부가 사회적 생산물의 생산·분배 및 소비의 대부분을 단일 국가계획에 의해서 결정하는 경제체제이다.³⁹⁾ 또, 북한에서 법은 모든 경제활동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작용하므로 상업법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생산수단이 국가의 소유로 되어 있어서 국가가 모든 경제활동에 대하여 계획과 집행의 임무를 수행하고⁴⁰⁾ 법은 바로 이러한 국가의 경제조직 역할을 지원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예컨대, 모든 재화의 생산·사용과 유통이 개인이 아닌 국가의 경제계획에 의하여 통합되고 조정되며 여기서의 경제계획은 곧 법적 강제력까지 갖는 것이어서 법이 그 계획에 대해 규범적 우위를 가질 수가 없게 되어 있다.⁴¹⁾

「사회주의상업법」도 사회주의 경제방식으로서의 계획시스템을 반영하여 상업이 주민들에 대한 공급사업이며 그 공급사업은 계획관료가 주도하는 주문제 생산, 유통, 구매, 급양사업, 사회편의봉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5. 공산당 결정의 사실상 우위(법치주의의 부정)

북한은 구 소련이나 동유럽의 경우와 같이 국가법체계의 위계질서를 무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산당의 결정, 특히 당 정치국의 결정이 법률의 효력보다 우위에 서는 경우가 많다.⁴²⁾ 예컨대 구 소련의 경우 소련 최고소비에트가 제정하는 연방법률에 기타의 법규들

38) 앞의 책(경제사전(1)), 324-325면.

39)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신경제학사전, 서울: 대화당, 1976, 173면.

40) 상업·유통분야에 대한 경제계획은 내각의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수립된다. 국가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계획은 상업성에 하달되며 이들 부서에서는 상업부문에 대한 지시를 받아 주민들의 소비품 수급상황을 파악한 다음, 도매관리국 및 지방상업지도국을 통해 하부기관을 직접 지도·통제하게 된다. 상업부의 도매관리국은 산하부서인 지구도매소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통제·감독하기 위한 행정기관으로 당의 상업정책과 국가계획위원회 계획에 의거하여 상품유통관계사업을 실시하여 생산의 질적인 제고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도매관리국 산하 각 부서의 역할을 보면, 계획처는 상품의 유통계획과 전망계획을 작성하고 하달하는 한편 산하기관이 작성한 계획의 집행을 지도·통제한다. 부기처는 배정한 예산의 자체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상품유통에 따른 상품배정 및 손익관계를 담당한다. 운수처는 산하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수송계획을 작성하고 수송업무를 지도·통제한다. 교류처는 상품교류업무 및 체화된 상품의 파악과 처리를 수행·통제하고 있고 섬유처 및 식료처는 각각 섬유류상품과 식료품에 대한 배정업무와 산하 기업소별로 소요량과 공급량을 조정한다(북한연구소편, 북한 총담, 1983, 655-6면).

41) 법무부, 앞의 책(북한법의 체계적 고찰(I)), 13면.

42) 이를 두고 '정치적 법치에 대한 우위'라고 설명하는 남한의 일부학자도 있으나, 명백한 법치주의 부정현상을 호도하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본다.

이 합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당 정치국의 승인없이 최고 소비에트도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당 정치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료회의는 당 정치국과 함께 혹은 당 정치국의 지시에 따라서 법률과 상반되는 판단과 결정도 내리고 이 결정들은 공포없이 즉시 실시되었다.⁴³⁾ 북한에서도 법의 준수를 강조하고는 있으나,⁴⁴⁾ 법적인정성의 측면에서 노동당의 결정, 행정명령 등과의 관계에서 법 자체의 실효성과 규범성이 명확하게 담보되지 못하기에 법치주의에서의 준법정신의 강조가 아니라 전체주의, 사회주의 체제의 강화에 유용하다는 이유에서일 뿐이다.

북한은 상업정책을 '상업발전의 기본방향과 그 관철을 위한 과업을 제시한 조선노동당의 정책'이라고 규정한다.⁴⁵⁾ 이러한 이 노동당의 상업정책은 사회주의 상업의 유일적 지배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개인상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여 상품유통 영역에 남아 있는 자본주의적 착취관계를 없애고 '사회주의 상업의 본질적 요구'에 맞게 상업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것이 북한 사회주의 상업정책의 골간이라고 한다.⁴⁶⁾ 또, 북한은 상업활동의 기본을 '상품의 공급'으로 보고 있다. 그리하여 상업활동에서 기본을 이루는 것은 계획적인 상품공급사업이며 상품공급사업에서 주문제를 실시하는 것은 '당의 일관된 노선'이라고 한다.⁴⁷⁾ 북한의 사회주의 상업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6. 상업의 허가주의적 특징

해방 직후 1946년 북한은 '상업기관에 관한 법령', '상업발전에 관한 법령', '상사·회사 설립인가 방침에 관한 건', 상업조합령 등을 제정하여 상업을 규율하였다. 그러나 그 이듬해 1947년 '상업허가제 실시에 관한 포고'에 의하여 회사 또는 개인으로서 상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점포를 완비하여 시·군 인민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동 포고 제2조). 이는 1955년 8월 제정된 '개인상공업 허가에 관한 규정'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상업을 경영하려는 공민은 법정된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만 하였다(동 규정 제2조). 따라서 모든 종류의 상업에 있어서 허가가 요건으로 된 것이다. 1958년 이후에는 개인 상공업이 허용되

43) 법무부, 소련법연구(I)-합작투자·대외무역·기업법-, 법무자료 제129집, 1990, 7면.

44) 장명봉, "북한의 최근금융법제 동향", 북한법연구 제10호, 북한법연구회, 2007, 288면.

45) 앞의 책(경제사전(2)), 57면.

46) 앞의 책(경제사전(2)), 57-8면.

47) 앞의 책(경제사전(2)), 58면.

지 않아 이러한 허가주의조차 잔존하고 있는지는 법규상 분명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공식적인 상업이 이루어지려면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본다.⁴⁸⁾

IV. 「사회주의상업법」의 내용분석(제1장과 제2장)

이하에서는 사회주의 상업법의 내용 중 제1장과 제2장을 순서대로 분석한다.

제1장 사회주의 상업법의 기본

제1장은 북한 사회주의 상업의 기본목표, 상업질서에 대한 국가의 역할정립, 상업에 대한 지도관리·운영방식의 원칙, 상사관계에서의 대외교류 협력의 기본방침을 정하고 있다.

[제1조: 사회주의 상업은 인민들에 대한 공급사업이며, 그들의 물질문화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상업법은 상업활동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상품유통과 봉사사업을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한다.]

이는 북한에서 행해지는 사회주의 상업의 정의와 사회주의 상업법의 목적을 정한 규정으로서 다른 규정의 내용과 방향을 미리 제시하고 있다.

세계역사상 ‘상업’의 개념은 자급자족 경제가 교환경제로 이행된 단계의 경제상황을 가장 먼저 반영하여 생산자가 아니면서 ‘유형재화’의 조달·양도 기능을 하는 자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처음 성립된 것이다. 그 이후 근세에 이르러서 봉건적 경제제도가 붕괴되고 정치적으로 중앙집권제가 확립되자, ‘무형의 서비스’와 같은 보조업까지 포함하고⁴⁹⁾⁵⁰⁾ 영업의 형식과 범위에 따라 포괄적으로 상행위를 규율하는 등 상업의 개념이 대폭 확대되었다.⁵¹⁾ 이러한 상업개념은 매개행위, 집단거래 등으로 특징지어지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이러한 세계역사적, 근대적 의미의 상업개념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업을 국가가 일반국민 내지 주

48) 경제특구, 개성공단 등의 허가 사례.

49) 강위두, 상법요론, 형설출판사, 1997, 18면.

50) 최기원, 상법학신론, 박영사, 2009, 4면.

51) 1807년 프랑스 상법, 1891년 독일 신상법, 1911년 스위스 채무법 등의 내용.

민(법전상 인민이라고 표현함)에 대한 소비재의 공급사업만으로 한정하고,⁵²⁾ 상품유통을 전문적으로 담당수행하는 부문으로 보거나,⁵³⁾ 상품을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으로만 이해한다.⁵⁴⁾ 그리고, 그 공급사업에 대해서 큰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는 물품생산에 대한 기여범위가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수송·보관·포장 등은 생산과정의 하나로 생산물의 가치를 증가시키지만, 도매와 소매기구, 그리고 최종 소비자에게 상품이 전달되는 유통과정은 단순히 상품이전만을 가져오는 '비생산적인 활동'으로 이해한다.⁵⁵⁾ 그 결과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 상업·유통망과 서비스는 크게 발전하지 못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사회에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평균임금 수준이 전체 평균임금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주택·휴가 등 복지도 낮다는 것은 이러한 점 때문이다.⁵⁶⁾

생각건대, 북한에서의 상업개념이 국가기관의 주민에 대한 필요품 공급(배급)으로 정의되는 것은 공산주의의 정치이론, 경제이론의 결정적 영향 때문이다. 그리하여 북한에서 상업기능이 무시되는 것은 첫째, 노동가치설에 입각한 유통무시,⁵⁷⁾ 둘째, 상업이나 유통자체가 계획적인 생산과 소비에 수동적으로 조합되는 부수적 장치로만 인식되는 계획경제의 구조에 기인한다.

나아가 유통과정에서는 자본가치의 형태교체가 이루어질 뿐이고 어떠한 가치증식(부가가치의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다.⁵⁸⁾ 결과적으로 북한에서의 상업은 자율적인 매매, 교환, 운송 등 개념이 배제된 채 국가의 계획당국이 임의로 설정한 가격과 공급량을 주민들에게 할당한다는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어서 이른바 국민경제의 측면 중 분배의 한 날개로만 작용한다. 또, 생산과 분배가 모두 계획에 따라 결정되고 실행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결정과 가격에 따른 소비자의 행동준칙이 형성될 여지가 없게 된다. 자연발생적인 수요증가에 대해서도 이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당국이 공급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는 생산공장에 대한 통제로 실현될 수 있는 것⁵⁹⁾이 사회주의

52) 조선노동당출판사편, 김일성 저작집(18권), 평양: 사회안전부 출판사, 1997, 233면; 이러한 소비재 공급사업의 수단으로 상품공급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이는 이른바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한 기관, 기업소, 단체들 상호간에 체결되는 소위 계획적 계약의 형태 중 하나로 보게 되는데 이러한 계약은 진정한 의미에서 대등당사자간의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53) 앞의 책(경제사전(2)), 53면.

54) 위의 책, 54면.

55) 앞의 책(경제사전(1)), 531면.

56) 서규석·최상철, “북한 상사체계 개관”, 기업법연구 제3집, 1998.6, 113면.

57) 상업·유통에 의하여 자본가가 생성될 수 있으므로 이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는 기본인식이 생긴다.

58) 앞의 책(경제사전(1)), 531면. ; 앞의 책(경제사전(2)), 53면.

59) 앞의 책(경제사전(1)), 725면.

공급사업의 특징이다.

이는 북한에서 사적 기업활동, 회사의 조직형태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로지 경제활동의 초점을 국가의 계획에 의한 조직적·체계적 사업에만 두기 때문에 주민(인민)의 입장에서 자신의 필요(수요)에 따라 특정생산을 촉진시키거나 유통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음이 이 조문에서도 나타난다. 그리하여 가게나 기업의 수요충족, 이윤추구활동은 법률상 상업의 개념에서 배제되게 되었다. 「사회주의상업법」의 목적자체도 소비재의 유통과 그에 관련된 제도·질서확립에 주안을 두게 되고 영리추구의 국내 기업은 아예 존재하지 않으며, 소득을 증대시키려는 가게의 활동은 이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제2조: 국가는 상품공급에서 주문제를 바로 실시하여 상품에 대한 수요를 생산에 정확히 맞물리고, 생산된 상품을 제때에 수요자에게 공급하도록 한다.]

이는 두 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반부는 상품의 주문생산을 규정하고, 후반부는 상품의 적시공급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다.

자유주의 경제체제의 경우 생산의 목적은 인간의 본능적 영리추구에 있다. 그리하여 우리 상법은 시장질서에 따라 민간수요, 정부수요, 국제거래의 수요에 상응하는 기업의 생산을 긍정하고 나아가 이러한 행위의 유상성(有償性)을 인정하며 보통의 비상행위(非商行為)에서보다 높은 보수를 허용하고 있다(상사채권의 법정이율(우리 상법 제54조, 우리 민법 제379조), 소비대차나 영업범위내 금전채당의 경우 이자청구권 인정(우리 상법 제55조), 상인의 영업범위내 행위에 대한 보수청구권등(우리 상법 제61조)).

그러나, 북한 「사회주의상업법」의 경우 이러한 영리목적 생산은 전혀 인정되지 않고 계획을 입안하는 중앙관료에 의하여 주민의 수요량을 예측하거나 임의로 결정한 양만큼만 생산해야 하는 주문제⁶⁰⁾에서 주민의 수요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거나 생산자가 계획관료의 지시생산량에 맞추지 못하게 된다면 상품의 공급과잉 또는 공급부족이 발생될 수

60) 북한은 계획적인 상품공급의 일환으로 5개년 계획시기(1957-1961년)부터 상품주문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인민들의 요구에 맞게 상품을 계획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는 민주적인 제도와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정계길, “새로 제정된 북한의 사회주의상업법에 관한 연구”, 대륙연구소, 1992 가을호, 193면). 북한당국은 주문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상품수요 파악 및 상품확보, 상품배정과 공급사업 등을 전개한다.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 상업기관, 기업소는 수요를 감안한 상품주문서를 작성하고 중앙계획기관은 상품주문서에 따라 상품생산과 분배·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내려보낸다. 그리고 상품생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을 계획대로 생산·공급하도록 해야만 한다(서규석·최상철, 앞의 논문, 149면).

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러한 점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계획관료가 매우 현명하여야 하고 생산-소비의 양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구비되는 것이 필요충분조건인데 세계역사상 이러한 관료나 통계자료를 충분히 구비한 사례는 없었다는 점에서 기본적 구조의 맹점이 지적될 수 밖에 없다.

생산된 상품을 주민들에게 적시에 공급하는 사안에 있어서도 생산자-소비자의 장소적 차이, 계절적 공급·소비시기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유주의 상법의 경우 재화의 거래에 있어서 지역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그 공간적 이전을 해주고 댓가를 받거나(운송업: 우리 상법 제125조부터 150조까지, 제740조부터 제874조까지) 재화의 수요공급에 있어서 시간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창고업: 우리 상법 제155조부터 제168조까지)이 별도의 기업주체에 의하여 운영되며 이러한 활동도 수요공급법칙에 따라 발달되어 있다. 사회주의 상업에서는 이러한 장소적 차이, 시간적 차이 또한 상품의 수요량 예측, 생산량 결정·실행과 마찬가지로 계획관료가 예측·결정·실행하여야 한다. 더구나, 이러한 계획의 과정에서 주민의 수요를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아 이른바 자원의 왜곡이 일어날 수도 있다.⁶¹⁾

[제3조: 국가는 자립적 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에 의거하여 상품원천을 조성하며 수매 가공 사업을 강화하고 상품예비를 동원하여 더 많은 상품을 확보하도록 한다.]

이는 상품생산에서 원료조달 원칙과 방법, 부가가치의 창출, 생산증대의 방법을 정한 것인데 계획경제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사항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라 본다. 상품원천(상품원료)의 조달은 원칙적으로 자력갱생의 이념하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폐쇄경제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내용에서도 이념적 표현으로 기술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수매(收買)는 상품원료가 되는 자원의 확보에서 그 원료를 채취하여 공급하는 농어촌의 주민자체가 자신의 산물(産物)을 이윤추구 목적하에 사적으로 매매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정부가 매입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특징을 표현하고 있다. 가공사업을 통한 부가가치의 증대, 상품의 생산량 확대에 관한 규정은 다분히 선언적인 성격에 그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61)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수요에 따른 생산을 결정한다는 이른바 생산법칙이 작동되지 않는다. 의도적인 수요억제 축진이 제도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책당국이 수요억제를 하려면 수요가 증가되는 제품에 거래수입금을 높게 부과하여 소매가격을 인상시키거나 할당제·전표제, 재고통제, 판매통제를 실시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 반면 수요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려면 위의 반대방식을 취하거나 거래수입금을 낮게 부과하면 된다.

[제4조: 국가는 봉사혁명을 힘있게 벌려 상업조직과 기술, 봉사방법을 개선하고 상업시설의 현대화, 경영활동의 과학화를 실현하며 상업의 문화성과 봉사성을 높여나가기로 한다.]

북한의 체제에서 상업활동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정책사항이 아니지만 주민의 생활수준과 체제안정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제4조와 같은 선언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북한에서의 상업활동은 당과 주민(인민)에 대한 무보수의 봉사활동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점은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내재된 욕망 중 이윤추구 동기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경제원칙이 상업활동에 적용된 것이다. 자기자신의 행복과 복지를 추구하는 동기를 배제하므로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이들은 어디까지나 집단(공동체)에 대한 충성심과 봉사적 자세로만 그 행위를 견인해내야 한다. 이러한 봉사 정신만으로는 순간적·단기적 상업활동을 기대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상업활동으로 발전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지닐 것이다.⁶²⁾

생각건대, 상업조직과 기술, 봉사방법을 개선할 필요성은 어떤 경제조직에서나 요구되는 필연적인 기술혁신의 문제여서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상업시설과 경영활동의 현대화·과학화도 같은 맥락인데 상공업 역사상 상업설비의 발전(공장·유통업체의 설립, 분·지점의 설치·이전·폐쇄, 상호의 선정·사용, 공시제도의 활용), 경영활동의 선진화(이명조합제도 등 공동기업형태의 안출, 회사제도의 분화와 발전, 회사기관의 다양화)는 이윤추구 동기 없이 이루어진 예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비록 사회주의체제라는 틀 자체의 특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현대화·과학화를 실현하는 방법과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

[제5조: 국가는 상업에 대한 지도관리체계를 바로세우고 사회주의 상업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이 조문의 전반부는 사회주의 상업의 운영방침을 국가의 '지도관리'라는 체계하에서 수행하여야 한다는 계획경제의 기본원칙을 밝힌 것이다. 이는 제1조, 제2조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상업의 운영에서 국가나 노동당이 임명한 경제관료가 생산·판매·운송·보관·지점설치·지배인의 임면·소비량의 결정상 상충되는 의견의 조정까지 모두 담당해야

62) 그리하여 북한에서는 특히 봉사관계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봉사자들이 '인민생활을 책임지고 돌보는 인민의 총복'이라는 것을 정치사상적으로 주입시킴으로써 모든 것을 다마쳐 일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다. 제5조의 후반부는 상업의 과학적·합리적 관리운영원칙을 표현한 것인데 이는 상업운영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지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제4조에서 상업조직과 기술·봉사방법의 개선, 상업시설·경영활동의 현대화·과학화 선언과 취지를 같이하는 기술적·탈이념적 내용이다.

공산주의 사상체계에서의 과학화·합리화 자체는 이미 이념적인 부분을 내포하는 것이 상례(예, 혁명론, 국가소멸론, 국가발전단계설, 노동가치설 등)이지만, 여기에서의 과학화·합리화는 공산주의 경제이론, 정치이론과는 큰 관련이 없고 다만 하나의 정치체제를 운영함에 따르는 효율성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요청은 북한을 포함한 모든 사회주의 국가의 공통된 난점인데 여기에서 일종의 탈정치적인 경제엘리트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 즉, 북한에서도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이념이 잘 기능하지 않는 영역을 필연적으로 긍정할 수 밖에 없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제6조: 국가는 사회주의 상업발전의 요구에 맞게 상품유통사업을 강화발전시키며, 조건이 성숙되는데 따라 점차 완전한 공급제에 넘어가도록 한다.]

이 조문은 유통사업에 대한 발전촉진과 그 발전에 따라 접근하게 될 완전한 공급제에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사회주의 상업으로서 국가가 주민의 필요품(소비품)을 공급하고 사회급양을 하며, 편의봉사를 하는 것은 현재 주민들의 반대급부하에 하는 유상행위(有償行爲)인데, 완전한 공급제라고 하는 것은 장래에 상황이 호전되면(조건이 성숙되면) 무상(無償)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⁶³⁾ 그런데 북한에서도 2002.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계기로 북한의 상업유통부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 변화 중 하나는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보수가 차려지게 할 데 대한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철저히 구현한다'는 것이다.⁶⁴⁾ 과거처럼 평균적 정의에 입각한 사회주의적 분배가 아니라, 성과급에 기초한 차등분배로 바꾸어 상업활동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동 개혁조치에 의해 각급 기업소의 독자적인 경영활동이 일부 허용되면서 상업유통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판매수입을 예산수입으로 납부하게 되었다. 북한은 이를 위해 종래의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을 국가기업이익금으로 통합하고 성과급의 분배체계에 따라 보수를 분배하며 국가예산을 납부하도록 하였다.⁶⁵⁾ 이는 북

63) 정재길, 앞의 논문, 192면.

64)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회의(2004.3.25) 문일봉 재정상 보고내용.

65) 최상철, "북한 상업법 체계연구", 동북아법 연구 창간호, 전북대학교 동북아 연구소 2007, 298면.

한에서 단순한 공급사업에 중점을 두었던 분배체계가 자유주의적 방식으로 일부 수용됨을 시사한다.

그리하여 북한의 상업개념도 필연적으로 변화할 수 밖에 없는 사정에 있고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으로 정치적 요인에 따라 촉진 또는 지체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경제적 분배방식을 모방·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추세는 생산과 유통분야에도 전이될 수 있을 것이다.

자유주의 경제에서는 유통에 관해 이러한 법조문을 둘 필요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경제에서 유통사업의 발전은 생산업자·도매업자·소매업자의 발전 또는 보조상인 대리상이나 중개상이 거래의 대리권을 가지거나 대리권없이 영업주의 활동을 보조·촉진·중개하면 되고(우리 상법 제87조부터 제100조까지) 위탁매매인이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매매를 하거나(우리 상법 제101조부터 제113조까지), 운송주선업자(우리 상법 제125조부터 제150조까지)가 활동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상품유통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료조직과 집행이 중앙집권적인 방식으로 별도로 요구된다. 이 조항은 사회주의 상업법이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유통조직의 설치·운영을 선언적으로 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제7조: 국가는 상업분야에서 다른 나라·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이는 대외관계에서 개방경제 정책에 따른 국제교류와 상호협력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상업도 외국과의 무역, 국제조약에의 가입이 필요하고 구 공산권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국가와도 일정한 교류가 불가피한 데서 두어진 규정이다. 북한의 상업이 원칙적으로는 자력갱생이지만, 원자재와 에너지 등을 중국에 크게 의존하여야 하고 폐쇄경제체제에서도 최소한의 무역사업은 유지발전하여야 함을 나타낸다.

본조는 북한도 대외협력 교류에서 자유롭지는 않음을 법에서 표현한 것이다. 계획경제 방식에서도 대외무역에서의 임의적인 상거래를 전제하지 않을 수 없고, 대내적인 경제질서에서마저 일부 자생적인 상거래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⁶⁶⁾ 대외적으로는 독일통일과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제국의 붕괴로 인해 무역거래 및 경제협력 환경이 크게 변화하

66) 2002년 7·1 경제조치와 그에 이은 2006년 1월 상업은행법 제정(그 제정과정과 내용에 대해서는 김영희, “북한상업은행법 주요내용과 시사점”, 산은조사월보 제619호, 2007.6, 191면 참조), 신의주경제특구 설치, 개성공단설치, 현대아산(주)과의 금강산 관광사업실시 등은 이러한 대내·대외적인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였다. 종래 구상무역에 의존하였던 사회주의권과의 무역방식은 경화(hard currency)에 의한 결제방식으로 변화되었고, 과거 정치적·외교적인 장단기 무역협정을 통해 이루어졌던 대외무역거래가 이제는 신용과 외환, 그리고 상품경쟁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적어도 대외상품거래에서 시장적 요소를 도입할 수 밖에 없게 되었는데,⁶⁷⁾ 이러한 대외경제에서부터 상거래의 촉진이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제2장 상품공급

이 장은 사회주의 상업법의 핵심에 해당한다. 본 법의 내용자체가 국가계획기관이 어떻게 생산하여 어떤 방식으로 분배할 것을 정하면서도 주민들의 소비재에 대한 공급만을 상업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사회주의 상업법의 주요내용은 국가기관의 주문제 생산 원칙, 상업유통(상품)의 주체, 농산품, 수산품, 상비상품, 영양식료품, 여행용상품 등에 대한 규정이고 추가적으로 신용보증제와 비상적 상황에 대비하는 비상공급, 운송체신의 계획, 직권납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8조: 상품공급은 늘어나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적 수요에 맞게 상품을 확보하고 공급하여 인민들에게 보다 유복한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상품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인민들에게 필요한 상품이 골고루 차례지도록 공급하여야 한다.]

이는 상품공급의 개념정의를 한 것이다. 특히 제1문의 앞 부분에서 공급사업은 첫째, 정부 등 행정기관이 주민들에게 부여하는 물품공급에 한정된다는 것이고 둘째, 그 대상은 주민들의 소비재에 관한 공급일 뿐 생산재에 대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상품의 개념이 대단히 한정적이어서 소비재만을 의미할 뿐 생산재인 토지, 노동, 자본등에 대해서는 생산요소일 뿐 상품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제2문은 상품공급 사업의 주체는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임을 나타낸다. 문리적 해석으로는 지방정권기관이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상하관계인지 대등한 관계인지 판단할 수 없지만, 사회주의 북한의 특성상 지방정권기관(도, 시, 군 등)은 국가계획기관, 중앙상업지도기관의 하부기관으로서 중앙상업지도기관이 의사결정한 부분을 자신의 행정관할지

67) 서규석·최상철, 앞의 논문, 129면.

역내에서 집행하는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이해된다.

상품(소비재)의 장악을 통일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공산주의의 중앙집권적 원칙에 따라 어떤 상품의 생산, 유통, 과부족의 조절, 소비결정 부분이라도 국가계획기관, 중앙상업기관의 통일적 지휘와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하여 기능적, 지역적, 상품의 종류별, 기업소별, 기관별 권한분배, 권한위임이 원칙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결과로 된다.

[제9조: 도매상업기관, 기업소는 상품주문을 받아 생산에 맞물리고 상품의 확보와 지역간 교류를 잘하며 소매상업기관, 기업소에 상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소매상업기관, 기업소는 상품을 정확히 인수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본조는 생산과 유통의 주체를 도매상업기관,⁶⁸⁾ 기업소, 소매상업기관으로 함에 그 취지가 있다. 상품생산기관은 도매상업기관과 기업소(대규모의 생산담당기업소)가 담당하고 그 상품의 인수를 받아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유통책임은 소매상업기관, 기업소(소규모의 유통담당기업소)가 담당한다는 것이다.⁶⁹⁾

여기서 상품주문의 주체는 통상 경제행정관료일 것이고 하부상업기관, 기업소, 소매상업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경제행정관료가 통계표와 기타 정책목표에 따라 생산량을 주문할 것으로 본다. 여기에는 지방행정기관, 소매상업기관이나 기업소의 주문서를 통일하여 계산하고 미래의 수요량을 예측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 규정에서 생산 뿐만 아니라 상품의 확보까지 언급한 것은 원재료를 투입하여 생산하는 것과 함께 이미 소비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 상품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고 지역간 교류를 규정한 것은 북한의 각 지방사이에서 공급·유통사업을 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68) 도매상업기관은 도매소이다. 도매소의 종류는 중앙에 중앙도매소, 각 도에 도 도매소, 그리고 2-3개 시군의 상품공급을 관할하는 도매소가 있으며, 그 밖에도 특수한 도매소에 속하는 직물, 신발, 다과, 육류, 수산물, 농산물 도매소 등 제품·품종별로 전문화된 도매소가 있다(앞의 책(경제사건(1)), 433면).

69) 북한에서의 소비품 공급은 철저한 상업망에 의해 이루어진다(북한에서는 상업망이라는 네트워크가 특히 중요한데, 상업지도관리체제와 밀접한 연계속에서 상품확보와 공급기능을 수행하는 단위의 총체이다. 북한의 상업망은 도매상업망, 소매상업망, 사회급양망, 수매망 등으로 나누어지고, 이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도매상업망과 소매상업망이다(조영기, 북한의 경제제도와 관리, 무역경영사, 2003, 119면). 상업망의 기초는 상점이어서 이를 '상점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앞의 책(경제사건(2)), 55면)).

[제10조: 상품공급은 주문제에 의한 공급이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정권 기관, 상업기관, 기업소는 인민들의 수요를 연구하여 상품주문서를 작성하며 그에 따라 상품 생산과 분배, 공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북한의 경제상황에서의 주문제생산은 이미 제1장의 제2조, 제2장의 제9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임에도 다시 정한 것은 생산에서의 주문제 원칙을 한 번 더 강조한 것일 뿐 본조에 의해 특별한 규범이 창설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서의 작성에는 여러 기관이 관여한다. 국가계획기관, 중앙상업기관, 지방정권기관, 상업기관, 기업소가 각각 주민들의 소비품 수요량을 연구하여 주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주문서의 내용은 상하급 기관 사이에 중복하여 기재될 수 밖에 없다. 이는 가급적 직접 주민과 접촉하는 기업소, 상업기관의 수요량 측정·예측을 참고자료로 삼아 중급과 상급 지도·계획기관이 그 수요량 측정을 검증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의 주문서가 작성되어질 것임을 예정하는 것이다. 최종의 주문서가 작성되면 역으로 생산량이 결정되고 그 생산량의 분배와 공급의 세부지침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은 매우 정교한 계산과 예측, 총량측정, 분배단위의 결정, 공급방식의 운영까지 포함하여 연구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법조문의 내용과 달리 현실적인 실천은 매우 어려운 과제로 될 것이다. 북한을 포함한 공산주의 경제구조의 성패는 실로 이러한 계획, 계산, 주문서 작성의 성공여부에 달려있다고 본다.

[제11조: 중앙상업지도기관은 국가계획기관으로부터 상품총량을 넘겨받아 상품을 도(직할시)별로 분배하며 도(직할시)정권기관은 그것을 시(구역)·군별로 분배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분배단위로 내을 수 없다.]

이는 북한에서의 상품분배방식을 규정한 것이다. 이는 (1) 첫째, 주민에 대한 상품분배의 주체와 집행의 위계질서는 국가계획기관-> 중앙상업지도기관-> 도(직할시)-> 시·군임을 나타내고 기관, 기업소, 기관은 그 주체가 아님을 정한 것이다. (2) 둘째, 생산물의 분배방식은 원칙적으로 중앙에서 각 지역단위(도, 직할시, 시, 군 등)로 수직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⁷⁰⁾ (3) 셋째,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분배에 있어서는 주체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70) 다만, 북한은 상업에 대한 행정적 지도기능과 관리기능을 분리하고 도매상업과 소매상업에 대한 지도·관리를 분리하고 있다. 또, 도매상업은 중앙에서 관리하고 소매상업은 지방에서 관리한다. 도매상업의 중앙관리는 상품의 흐름을 원천적으로 국가수중에 집중시키는 데 목적이 있고, 소매

이 기관, 기업소, 단체가 상품분배의 단위로 기능하여 분배체계의 혼란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며 이들이 각자의 필요에 따른 임의분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제12조: 상업 및 상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위는 국가의 상품공급계획에 기초하여 상품공급계약을 맺고 그것을 어김없이 리행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통기관이 아니라 상품생산기관이므로 이들 상품생산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것이 본조이다.

먼저 상품공급계약의 당사자는 중앙계획기관과 상업·상품생산기관, 기업소, 기관이 될 것인데, 상업·상품생산기관, 기업소, 기관간의 관계는 상하관계라기보다는 상품생산의 단위, 상품공급의 성질, 품질별로 각기 다르게 역할분담할 것으로 이해된다.

이 상품공급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책임이 부과될 것이다. 다만, 고의나 과실·무과실의 구분이 없고 채무불이행, 제조물책임, 불법행위책임, 행정형벌, 행정질서벌과 같은 벌칙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생산된 상품을 생산기관으로부터 받는 것(인수, 출하)은 도매상업기관과 기업소이다.

제11조와의 체계적 관련성에서 본다면 도매상업기관, 기업소는 상품의 분배에 있어서 법정권한(法定權限)을 가지지 않고 국가계획기관, 중앙상업지도기관 등 분배의 법정권한(法定權限)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지시·지도를 받아 이들 도매상업기관, 기업소는 집행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13조: 지방정권기관과 상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료기지를 꾸리고 생산한 원료원천으로 여러 가지 식료품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본 조항은 주민들에 대한 식료품생산·공급사업을 특정하여 규정한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상업법」에서 정하는 공급사업의 주된 내용이 주민에 대한 기본적 의식주일 뿐임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의식주 중에서도 특히 식생활을 가장 우선함을 나타낸다. 본조에 의거하여 북한주민들에 대한 식량배급제도가 법적근거를 갖게 되며 국가기관 이외의 어떤

상업의 지방관리는 주민들에 대한 상품공급에 있어서 책임성과 역할을 높인다는 취지에서이다 (서규석·최상철, 앞의 논문, 129면).

71) 인수와 출하는 상품생산기관, 기업소, 기관으로부터 상품을 인도받아 상품유통에 관여한다는 것인데 인수와 출하의 개념구분은 분명하지 않다.

기관도 주민의 식생활에 관여할 수 없게 제도화되어 있다.

본 법에서의 식생활 유지사업은 각 지방마다의 사정에 따른 식료품생산을 원칙적으로 한다는 점과 식료품의 생산공정은 크게 원료원천의 제조와 완제품인 식료품생산의 두 단계 공정으로 규정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1) 식료품 공급사업을 각 지방마다의 사정에 따라 생산하고 공급하도록 하는 것은 식료품의 원료가 되는 농업, 수산업, 임업 기반 자체가 북한의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논과 밭, 임야, 바다, 강에서 생산되는 농작물, 수산물, 임산물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고 (2) 식료품의 생산공정을 2단계로 나눈 것은 원료의 조성과 완제품 생산이라는 최소한의 구분이다.

[제14조: 상업기관, 기업소는 수산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주민공급용 수산물을 넘겨받아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골고루 공급하여야 한다.]

본조에서의 수산물 공급사업은 제13조에서 정한 식료품 사업의 일부이지만, 수산물의 경우 제13조에서의 식료품 공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은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된다. 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다른 공정을 거치는 식료품생산이라면 제13조에 의해야 할 것이다.

본조에 의하면 수산물의 확보기관은 수산기관, 기업소, 단체이고 이들이 1차적으로 바다에서 수확된 수산물을 양도하는 기관은 상업기관, 기업소이다. 이를 양수받은 상업기관과 기업소는 수산물의 유통기능을 담당한다.

조문의 해석으로는 위와 같지만, 수산물의 확보와 유통에 관한 규정이 너무 간단하여 이러한 규정만으로 규율할 수 없는 많은 문제상황(수산물의 보관, 운송, 수산어구의 보급·개발사업 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하여는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행적인 지시·지도 방식에 의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제15조: 국가계획기관과 상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가 정하여준 일용잡화, 건재상품, 농촌상점에 갖추어놓아야 할 상품 같은 소비상품을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상업기관, 기업소는 소비상품을 떨구지 말고 정상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본조는 제13조, 제14조의 식생활 이외의 기본적인 잡화 등에 대한 생산과 공급에 대해 규정한 것이다.

여기에서의 「일용잡화」라 함은 식료품(수산물 포함) 이외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의미하고, 「건재상품」이란 건축에 소요되는 물건이며, 「농촌상점에 갖추어야 할 상품」이란 농업중심사회에서 특히 농촌상점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그 상품은 앞에서 언급한 일용잡화를 모두 포함하여 농촌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상품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

본조의 제1문에서 일용잡화 등의 상비상품(常備商品)을 우선적으로 생산하도록 하는 규정은 문리규정(文理規定)대로 해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국가계획기관과 상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가 이러한 상비상품(常備商品)을 우선하여 생산한다면 앞의 2개조문(제13조와 제14조)의 식료품생산, 수산품의 공급에 관한 사업이 후순위로 될 수 있는데 「사회주의상업법」이 주민의 식생활을 최우선의 중요 공급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배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제1문에서의 「우선적 생산보장」은 주의적, 홍보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본다.

제2문의 규정은 상비상품(常備商品)을 부족없이 공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인데 이 또한 일용잡화 등 주민의 생필품이 모자라지 않도록 공급해야 한다는 주의적, 홍보적인 의미를 지닐 뿐이라고 본다.⁷²⁾

[제16조: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정권기관, 상품생산 및 상업기관, 기업소, 단체는 영양식료품 같은 어린이용 상품을 선차적으로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본조는 어린이용 식품을 우선 생산하여 공급할 것을 생산기관과 유통기관의 책무로 정하는 내용이다. 이는 영아와 유아에 대한 영양식료품에 대한 배려라는 측면에서 후세대의 건강과 복지를 지향하는 급부행정적인 것이다. 그런데 급부행정 중에서도 영양식료품에 대한 배려는 가장 복지국가 지향적인 것인데 이를 실효성있게 하는 구체적인 재원과 집행이 뒷받침되어야 실효성이 있게 되는 것은 자유주의국가 헌법에서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규범력과 같다. 따라서 이는 제15조, 제17조, 제18조와 같이 홍보적, 선언적 규정의 성격을 지닌다고 해석된다.

[제17조: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정권기관, 상업기관, 기업소는 상품총량 가운데서 중요상품의 일부를 남겨두었다가 협동농장 결산분배시기에 집중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상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촌에 보내줄 상품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72)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수급균형노력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이래 각 분야에서 공급량의 부족현상을 겪고 있다. 김정일이 창안하였다고 하는 1984년 8월의 8.3 인민소비품 증산운동 전개라든가 1989년의 경공업 혁명운동전개 등도 이러한 것 때문이다.

본조는 분배의 집중시기를 정한 것이 특징적이다. 협동농장의 결산시기에 분배를 집중시키려는 것의 취지는 협동농장의 결산결과에 대한 주민(협동농장원)의 기대에 부응하라는 것으로 이해된다. 각 협동농장에서 주민들이 공동생산하여 결산기에 분배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기대치가 있을 것에 대한 배려인데, 이렇게 분배의 집중시기를 정해 놓으면 수요가 있는 시기에 적당한 분배를 할 수 없게 되고 분배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분배량의 부적정, 분배의 시기에 대한 왜곡을 감수하면서까지 협동농장의 결산기에 분배를 집중하여야 한다는 것은 주민의 기대심리에 부응하도록 하려는 정책적 취지가 내포된 것이다.

제2문에서 농촌에 보내줄 상품을 적기에 보장하라고 규정한 것은 북한사회에서 농촌생활단위를 강화하려는 것인데⁷³⁾ 1차산업 중에서도 특히 농촌에서의 생산체제를 어촌, 광산촌보다 중시하는 현실적 경제사정을 표현한 것이다.

[제18조: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상업기관, 기업소는 탄광, 광산을 비롯한 중요대상에 상품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노동보호물자와 우대상품은 기준에 따라 정확히 공급하여야 한다.]

본조의 제1문에서 우선적 공급대상을 정한 것은 제15조(상비상품의 우선적 생산보장), 제16조(어린이상품의 선차적 생산공급)에 비추어 특별한 규범적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탄광, 광산 등 중공업에 필요한 생산시설에 대한 상품공급사업을 중시하는 입법취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급사업보다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내용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 「대상」 이라고 표현한 것은 탄광, 광산 등 상품을 필요로 하는 기관, 사업소를 모두 공급 「객체」 로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탄광」 이라 함은 석탄 등 채탄시설을 하는 장소를 말하고, 「광산」 은 탄광 이외의 지하자원을 채취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제2문에서 「노동보호물자」 와 「우대상품」 의 공급을 규정한 것은 제1문에서의 탄광, 광산에서의 채탄, 채굴 등 생산활동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노동복, 채탄기구, 채광시설물 등의 생산도구, 기타의 필수품의 공급을 지칭하는데 이들 필수품은 각 수요기준에 가급적 맞추고 정확하게 공급하게 하며 이들 광산노동자의 사기를 진작시켜 생산의 능률을 제고하려는 취지를 취지를 담고 있다.

73) 사회주의 상업의 역할 중 특히 중요한 것은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 연계'를 실현시키는 기능으로(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민사법사전, 평양: 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364면), 이것은 확대재생산을 실현하고 노동자와 농민간의 생활상 차이를 없애주며, 농업단체(협동농장)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 때문이다.

[제19조: 지방정권기관과 상업기관, 기업소는 여러 가지 부식물과 어린이옷, 일용 세소상품 같은 상품에 대한 자체 가공사업을 하여야 한다.]

본조는 지방의 사정에 맞는 자체 가공사업의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자체 가공사업이란 각 지방적 행정단위에서 그 지방사정에 맞는 상품의 가공을 하는 사업이다. 원래 사회통념상 「가공」 사업은 물건의 종류를 변경하지 않는 정도에서 노력을 가하여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어떤 재료에 노력을 가하여 전혀 다른 종류의 물건을 만들어내는 「제조」나, 물건의 용도에 따르는 기능이 완전하지 못할 때 그 성질에 따라 완전하게 하는 「수선」과는 구별된다.⁷⁴⁾ 그러나, 북한의 사회주의 상업법 제19조에 규정된 가공사업은 본래의 가공사업과 함께 제조·수선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본조에서 지방정권기관이 주도하는 가공사업을 규정한 것은 중앙계획기관과 중앙상업지도기관에서 북한의 모든 행정구역에 유효적절한 생산시설을 하는 한계가 있고 각 지방에서의 산물(원천), 수요품을 고려하여야 하는 효율성 측면도 있다. 다만, 지방에서의 자체 가공사업은 부식물과 어린이옷, 일용 세소상품 등에 한정될 뿐이어서 대규모의 조직화·체계화된 생산시설로 발전하기는 어렵고 중앙생산기관의 하부 생산조직, 보조적·보충적 생산단위로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추론된다.

[제20조: 지방정권기관과 해당상업기관, 기업소는 여행자들을 위한 상품을 확보하며, 주요 역구내와 정류소에 매대를 꾸려놓고 손님들에게 여행용 상품과 지방특산물, 청량음료 같은 것을 정상적으로 팔아주어야 한다. 철도운수기관은 여행자들에게 필요한 상품을 팔아주기 위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본조는 여행자들을 위한 상품확보, 매대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남한에서와 같은 거주이전의 자유(우리 헌법 제14조)가 원칙적으로 대단히 제한되므로⁷⁵⁾ 이 규정의 의미는 현실적으로 매우 적다. 제1문의 「여행자들을 위한 상품」에는 제1문의 후반부에서 언급한 지방특산물, 청량음료 등의 내용을 보아 주로 여행자에게 필수적인 식료품, 음료수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⁷⁶⁾ 「매대」라고 하는 것은 판매대를 의미하고 이러한 판매대의

74) 손주찬, 상법(상), 박영사, 2004, 70면.

75) 물론 북한에서도 헌법 제75조에서 「공민은 거주·여행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단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되고 있을 뿐이다.

76) 북한에서는 사회급양사업의 일환으로 식당과 함께 청량음료점 등 관련상점들을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한 대민정책으로 되어 있다.

설치장소(역구내와 정류소)까지 특정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상품을 공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팔아주어야 한다」고 표현하는 것도 우리 남한의 입법적 내용과 대조된다. 다만, 본조는 매우 제한적이거나 사회주의 상업법이 주민이 일정한 화폐로써 상품을 구할 수 있는 예시를 한 점이 의미있다고 생각된다.

제2문에서 철도운수기관의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행자들에게 필요한 상품을 팔아주기 위한 조건」이란 여행용 상품을 팔 수 있는 역구내와 정류소의 판매대 공간확보, 판매대 설치, 안내원, 안내문구의 표시, 보관설비의 제공 등 가능한 범위내의 협조를 의미한다.

[제21조: 국가계획기관과 해당기관, 기업소는 민수용 연료를 계획에 맞물려 생산하며 주민체제와 비생산부문의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에 골고루 공급하여야 한다. 운수기관과 해당기관, 기업소는 민수용연료를 제때에 실어날라야 한다.]

본조는 주민의 민수용 연료의 생산사업과 공급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연료의 공급문제는 식량의 공급문제 못지 않게 중요하고도 복잡한 난제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에도 불구하고 민수용 연료공급은 1차적 가공품인 석탄 등에 크게 의존하고 도시가스 공급과 같은 양질의 연료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데는 본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료생산·공급체계의 문제이기도 할 것이다.

제1문에서의 「민수용 연료」라 함은 민간에서 사용하는 연료를 의미한다. 제1문의 전반부는 민수용연료의 생산에 대하여, 후반부는 민수용 연료의 공급을 받는 대상에 대해 정하고 있다.

제2문은 위의 법조문에서와 달리 생산된 상품(민수용 연료)의 운송에 대해서까지 규정하고 있다. 이 운송사업은 육상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는 호천(湖川), 항만(港灣)과 해상, 공중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육상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실제로 우리 상법에서와 같은 해상운송⁷⁷⁾이나 항공운송에 의해 이루어지는 예는 거의 없을 것이고 주로 육상운송에 의할 것이다. 이 운송에 대해서도 운송의 주체와 대상, 운송물의 적재, 보관, 인도, 멸실과 훼손에 대한 책임, 순차운송 등에 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데, 사회주의 상업법에서는

77) 우리 법에서는 해상운송에서 용선계약(항해용선계약, 기간용선계약), 개품운송계약이라는 도급계약이 행해질 것이지만(이기수 외, 보험·해상법, 박영사, 2008, 476면), 이러한 운송계약은 북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에 대한 아무런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리하여 경제관료와 운송기관에 의한 편의적인 지시와 관행적인 운송만이 존재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해석된다.

[제22조: 국가는 전기용품, 전자제품 같은 일용상품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제를 실시한다. 신용보증제를 실시할 상품품종과 기간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본 조항은 신용보증제를 규정하고 있다. 신용보증제란 상품의 품질을 신용할 수 있게 정부가 보증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남한에서의 KS제도와 같은 품질보증제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된다.⁷⁸⁾ 신용보증제는 국가의 경제계획기관이 정하지 않고 내각이 그 상품품종과 기간을 정하게 되어 있다. 신용보증제를 실시하는 상품은 모든 상품이 아니라 특히 품질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수의 경우로 한정되어 있고 전기용품, 전자제품과 같은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상품인 2차상품이 예시되어 있다.

[제23조: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정권기관, 상업기관, 기업소는 상품유통에 대한 장악지휘체계를 세우고 중요상품 확보·공급사업을 정기적으로 장악·지휘하여야 한다. 상품의 지역간 교류와 체화되었거나 못쓰게 된 상품같은 것은 제때에 조절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의 제1문은 상품유통체계에 대한 수직적 지휘체계를 규정하고 있고, 제2문은 상품의 교류와 조절처리에 대해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제1장과 제2장의 다른 규정들의 해석에서 당연히 추론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조에서 다시 한번 더 상품유통과정이 중앙집권적 계획체제로 통일성을 기하여 상명하복의 질서를 굳게 유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요상품 확보, 공급사업 즉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지휘·장악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규정한 것은 기간산업 상품의 생산·유통에 있어서 정기적인 점검 없이는 지휘체계가 불안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제2문에서는 상품의 지역간 교환체계와 불량품, 부패품 등의 폐기처분을 규정하였다. 그런데 이는 상품유통의 한 내용으로서 당연히 포함되는 것인데 별도의 규정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78) 그러나, 북한에서 상업은 소비자의 기호와 요구를 생산기업체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없고, 현실적으로 기업은 유익한 생산제품을 적기에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능이 없어 생산자체가 질적 측면보다는 양적 측면에 치우치고 있다. 또, 상업기관의 행위는 국가의 계획에 따라 상품을 이동케 하는 단순한 수불행위(受拂行爲)에 국한되고 있어서(서규석·최상철, 114면)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킬 동기가 적다.

[제24조: 중앙상업지도 기관은 자연피해가 특수하게 제기되는 대상에 필요한 상품예비를 조성하여야 한다. 조성한 상품예비는 해당상업기관, 영업소를 통하여 공급한다.]

본조는 국가재난의 경우를 대비하여 둔 규정으로서 국가재난의 경우 비상공급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 국가재난의 예로서 자연피해를 들고 그 밖에도 특수하게 제기되는 비상대처가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홍수, 가뭄, 태풍과 같은 자연피해 등 국가재난에 대비하여야 하는 주체는 중앙상업 지도기관이다. 다만, 자연피해 등 국가재난의 예측 등은 더 상위의 계획기관이나 내각에서 담당할 것으로 보이고 중앙상업지도기관은 필요한 비상공급(상품예비)을 조성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2문은 제1문에 의하여 조성한 상품예비를 공급하는 절차에 대하여 규정한 것인데 중앙상업기관이 조성한 상품예비는 해당상업기관, 기업소의 유통기관을 경유하도록 하였다. 다만, 자연재해 등 국가비상시에는 본조에서 규정된 중앙상업기관, 지방상업기관과 기업소 이외의 다른 행정조직과 유통조직이 모두 관여할 것이 예상되므로 본조에서의 규정은 국가재난시에 필요한 사항의 최소한의 내용으로 해석된다.

[제25조: 중앙기관이 운영하는 직매점에서는 자기부문 영업소에서 새로 만든 상품을 위주로 하여 팔아주면서 인민들의 수요를 연구한 데 기초하여 상품의 가치수를 늘리고 질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직매점에서는 주민들에게 기준에 따라 공급하게 된 상품과 다른 부문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생산한 상품을 팔 수 없다.]

본조는 직매점의 기능과 의무,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직매점은 자기부문의 기업소에서 제조한 상품을 매매하는 장소로 정의되었다. 그리고 특히 중앙기관의 직매점에서는 (1) 첫째, 이러한 상품의 매도를 하여야 하고, (2) 둘째, 특별한 책무로서 주민들의 수요를 연구하여야 하며, (3) 셋째, 상품의 종류를 다양하게 할 것과 품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직매점 특히 중앙기관이 운영하는 직매점이 상품매도 뿐만 아니라 소비자로서의 주민의 수요파악, 상품의 종류·품질 확충 제고까지 하여야 한다는 것은 대단한 고난도의 경제예측과 통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한정된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연구가 얼마나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제2문에서는 직매점의 직권남용을 우려하여 본래 취급허용범위를 넘어서 일반주민에게

공급할 예정인 상품, 직매대상이 아닌 다른 부문기관, 기업소나 단체에서 생산한 상품을 팔 수 없게 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매점의 권한이 다른 매점의 그것보다 강화될 수 있다는 것 때문이며 이 권한강화로 인한 남용을 경계하는 주의적 규정으로 풀이된다.

[제26조: 운수기관과 체신기관은 상품을 수송계획에 따라 수송·송달하여야 한다.]

본조는 상품의 운송과 체신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운송업체도가 운송주선업과 더불어 물건을 공간적으로 이동시킴으로써 타인의 상업을 보조하는 독립영업으로 기능한다. 이는 창고업과 함께 상인에 대하여 필요불가분의 존재이다. 그러나, 공산주의 경제구조에서는 상인, 독립상, 운송업, 운송주선업 등의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우리 상법 제2장, 제7장과 제8장에서 규정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사회주의 상업법에서는 본조항 하나만에 의하여 규율된다. 그리하여 운송의 당사자, 운송인의 주의의무, 운송물의 보관과 처분, 운송물인도, 운임, 수하인, 과실책임 유무 등에 관한 정함이 전혀 없다.⁷⁹⁾ 그리고 운송은 그 목적물에 따라 물건운송, 여객운송과 통신운송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조에서의 운송은 물건운송(‘수송’이라고 표현), 통신운송(‘송달’이라고 표현)만을 지칭한다. 통신운송은 물건운송과 그 객체의 성질이 매우 다르다는 점에서 운수기관과 별개인 체신기관에서 담당하게 하고 있다. 남한의 상사법제에서는 1994년 통신기본법 제7조 제1항이 삭제되기 이전까지는 통신운송을 전적으로 공익사업으로 보아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독점하고 있었다.

[제27조: 중앙상업지도기관의 승인없이 회의, 강습, 경쟁, 지원 같은 명목으로 기관, 기업소, 단체가 주민용 상품을 빼내거나 안면 또는 직권을 람용하여 판매공급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본조는 상품의 유통·판매공급에서의 상품부정유통과 직권남용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는 개정전 구법 제27조가 ‘중앙상업지도기관의 승인없이 회의, 강습, 경쟁, 지원 같은 명목으로 상품을 빼거나 안면 또는 직권을 람용하여 판매공급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던 것을 2004년 6월 개정할 때 ‘기관, 기업소, 단체가 주민용 상품’이라는 구체적

79) 물론 북한에서의 운수사업도 운송수단에 따라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운수로 분류되고 그 이용자는 운임을 내야 하는데 운송의 대상에 따라 화물수송운임 또는 여객수송운임을 지급해야 한다 (앞의 책(경제사전(2)), 655면).

문구를 추가한 것이다.

어느 시대, 어떤 사회에서나 부정행위, 직권남용이 전혀없이 유리처럼 투명한 예는 역사상 없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나 공산주의 계획경제등 어떤 체제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전혀 일소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본다. 다만, 공산주의 계획경제하에서는 계획관료 등 관료의 권한이 자유주의 시장경제주체보다 훨씬 광대하므로 이러한 확장된 권한을 남용·오용할 가능성은 객관적으로 커지게 되고 중앙집권적 통일성 원칙 때문에 이 남용·오용을 견제할 기능마저 잘 작동되기 어렵다는 맹점이 존재하게 된다.⁸⁰⁾

V. 결어

북한의 「사회주의상업법」은 북한의 기존 민법과 더불어 상업적 관계를 일부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남한 상법학자의 입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북한의 사회주의 상업법의 내용은 우리 상법과 체제·내용 자체가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와 다른 법체계, 법관념을 지닌 북한의 경우를 우리 법과 대비하여 분류하는 것 자체가 오류일 것이다. 북한의 사회주의 상업법을 통하여 그 유통질서를 고찰하는 것은 북한의 경제질서를 이해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북한의 「사회주의상업법」은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이념에서 떠날 수 없다.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적 법률관에 의하면 법 자체가 독자적으로 있을 수 없고 경제관계의 종속변수에 불과하지만, 스탈린주의적 법률관에 의하면 위의 관점과는 별개로 법이 계급투쟁과 국가관리의 수단으로서 유용성이 인정된다.

북한에서는 자유주의 법에서와 같이 헌법->법률->명령->규칙->조례 등 법의 상하관계에 대한 규정이나 이론이 없지만, 북한헌법과의 관계에서는 헌법 자체가 북한의 체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상업법은 그 헌법의 하위에 있다.

북한에서 민법은 재산관계에 대한 민사적 규제에 관한 법이고 상법을 따로 제정하고 있

80) 1990년대 이후에는 북한의 사회주의적 공급체제가 흔들리고 있는데, 식료품·경공업제품·일용품 등 공급량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당간부들의 몰자 부정유통행위도 그 원인으로 지적된다. 그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시장의 확대를 북한의 정책당국은 비사회주의적 현상의 확산으로 인식하고 단속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서규석·최상철, 앞의 논문, 160면).

지 않아 상법내용에 해당하는 것들이 일부 민법편에 수용되어 있다. 그러나, 상업법이 정하는 상사유통관계는 사회주의 경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상사법률관계를 그 직접적 대상으로 하여 물건의 제조, 판매, 운송, 여행용품에 대한 규정, 기업소, 도매소, 소매소, 도시와 농촌의 물자 교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의의의 상법(상거래)의 대상을 다수 포함하고 민법과는 별도로 형성된 상업질서의 법이다. 다만, 북한의 상업법은 상법과 동일시될 수 없고 형식적 의미의 상법이 북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 북한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오로지 투입노동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보므로 상업에서의 영리추구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대신하는 경제의 국가적 계획과 고권적 유통질서만이 존재한다.

다만, 실질적 의의의 상법의 맥아를 찾아보려는 노력은 상업법과 같은 법률의 검토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사회주의상업법」이 우리 실질적 의의의 상법 대상이 되는 사항(생산, 유통, 매매, 보관, 운송 등)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사회주의상업법의 성격을 살펴보면 첫째, 이 법은 상인·상행위 개념을 부정한다. 노동에 의하지 않는 것은 경제적 가치가 부여될 수 없다고 보는 시각에서는 상행위를 긍정할 수 없게 된다. 그 연장선상에서 회사(영리사단법인)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북한에서 일반인과 구별되는 상인의 개념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당연상인(상법 제4조), 의제상인(상법 제5조)과 같은 개념이 아직은 통용되기 어렵다. 둘째, 이 법은 소유권의 국유화를 원칙으로 한다. 북한은 1958년 이후 소유형태와 상업형태가 국유화 내지 사회주의적 소유로 변모하였으므로 그 이후 개인 상공업이 전혀 인정되고 않는다. 셋째, 이 법은 공사법의 구별을 하지 않는 법체계내에 있다. 생산수단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사회에서 공법과 사법의 구분은 무의미하게 된다. 법은 사회경제제도의 한 표현방식일 뿐이라고 보므로, 소유권제도와 경제질서 자체가 국가의 행정적 행위가 추축이 되는 공법 위주로 형성되게 되고 사회주의 상업법은 유통질서법적 성격이 강하다. 넷째, 이 법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특성을 담고 있다. 다섯째, 이 법보다 공산당의 결정이 사실상 우위에 있기 때문에 법치주의에 기초해 있지 않다. 여섯째, 이 법은 예외적인 영업에 대해서도 다양한 제한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사회주의 상업법의 내용 중 제1장은 사회주의상업의 개념정의, 상품공급에서의 주문제, 수매 가공사업 강화, 봉사혁명, 상업에 대한 지도관리체계, 사회주의 상업발전의 요구에 맞는 상품유통사업, 완전한 공급제의 목표, 국제 교류와 협조를 규정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주민들의 물질문화적 수요에 맞춘 상품의 확보·공급, 도매상업기관·기업소의 상품확보·지역간 교류, 소매상업기관·기업소에 대한 상품의 정상적 공급, 상품주문

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생산과 분배·공급계획 작성, 상품공급계획에 기초한 상품공급계약과 이행, 원료기지를 기초로 한 식료품 생산, 수산물의 공급, 상비상품의 우선적 생산보장, 협동농장 결산분배시기의 집중적 상품공급, 탄광·광산 상품의 우선적 공급, 노동보호물자와 우대상품의 공급, 부식물과 어린이옷·일용 세소상품의 자체 가공사업, 여행자들을 위한 상품 확보·매매, 민수용연료의 생산·공급·수송, 일용상품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신용보증제, 상품유통에 대한 장악지휘체계의 확립, 자연피해시 상품예비의 공급, 직매점의 기능과 의무·금지사항, 운수기관과 체신기관의 수송·송달, 상품부정유통과 직권남용행위의 금지를 정하고 있다.

■ 참고문헌

1. 국내문헌

(1) 단행본

- 강위두, 상법요론, 형설출판사, 1997.
 손주찬, 상법(상), 박영사, 2004.
 이기수 외, 보험·해상법, 박영사, 2008.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09.
 최기원, 상법학신론, 박영사, 2009.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편, 신경제학사전, 대학당, 1976.
 노재봉 등, 북한경제백서, 2002.
 법무부,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I), 법무자료 제166집, 1992.
 법무부,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III)-상사·경제·노동관계법, 법무자료 제216집, 1997.
 법무부, 소련법연구(I)-합작투자·대외무역·기업법-, 법무자료 제129집, 1990.
 북한연구소편, 북한 총람, 1983.
 이태욱, 북한경제와 주민생활(북한의 오늘 2), 공보처, 1993.
 정경모·최달곤 편, 북한법령집(제1권)(서울: 대륙연구소, 1990).
 최종고, 한국법과 세계법, 교육과학사, 1989.
 현승중, 비교법입문, 박영사, 1972.

(2) 논문

- 강구진, “북한법에 대한 소련 및 중공의 영향”, 국토통일, 서울: 국토통일원, 1975.11.
 권재열, “남북한 통일상사법 정립방향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6집, 2000.10.
 서규석·최상철, “북한 상사체계 개관”, 기업법연구 제3집, 1998.6.
 장명봉, “북한의 최근금융법제 동향”, 북한법연구 제10호, 북한법연구회, 2007.
 정재길, “새로 제정된 북한의 사회주의상업법에 관한 연구”, 대륙연구소, 1992 가을호.
 최달곤, “북한법의 체계와 법원”, 북한법령집 제1권, 대륙연구소, 1990.
 최달곤, “북한법의 체계와 특색의 구명을 위하여”, 북한법의 체계와 특색, 서울: 세종연구소, 1994.
 최상철, “북한 상업법 체계연구”, 동북아법 연구 창간호, 전북대학교 동북아 연구소 2007.
 최종고, “북한법의 구조와 사상”, 북한연구, 1990 가을호.
 최종고, “북한법의 구조와 사상-주제법 사상과 사회주의 법무생활”, 저스티스 제25권 제1호, 서울: 한국법학원, 1992.

2. 북한문헌

(1) 단행본

- 북한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 평양: 평양종합인쇄공장, 1973.

-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민사법사전, 평양: 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법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말대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편, 경제사전(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편, 경제사전(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사회과학출판사, 철학사전, 평양: 평양종합인쇄공장, 1985.
조선로동당출판사편, 김일성 저작집(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조선로동당출판사편, 김일성 저작집(1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조선로동당출판사편, 김일성 저작집(1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조선로동당출판사편, 김일성 저작집(2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홍극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제정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6.

(2) 논문 등

- 방계문, “공화국은 우리 당 정책실현을 위한 강력한 수단”, 공화국은 사회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
평양: 과학원출판사, 1964.
법규해설: “사회주의상업법에 대하여”, 민주조선, 평양: 내각편집위원회, 1992.5.8-6월 9일까지의 발표문).

3. 외국문헌

大木雅夫, 比較法講義, 東京: 東京大出版會, 1992,

투고일자 2010.05.20 심사개시일자 2010.05.25 게재확정일자 2010.06.16

Hongik Law Review, Vol. 11, No. 2(2010)

[ABSTRACT]

The analysis of the North Korea's Commerce Act

Woohyun Chun

North Korea's parliament approved the Socialistic Commerce Act in 1992, which is in force now. We, South Korea's Business Law researchers should concern this Commerce Act. The Act prescribes some of the business law as well as the North Korea's Civil Act. To research the North Korea's Socialistic Commerce Act is the best way to understand North Korea's structure of commerce, economic situation and distribution of goods.

North Korea's Commerce Act's effectiveness is inevitably dependent on political ideology(socialism or communism). By the doctrine of the orthodox Marx-Leninism(Communism), there should be no law(the upper part) independent to the economic situation(the lower part) in the society. On the other hand, by the Stalinism the law is regarded as much more useful mechanism in preserving the Proletariat Revolution and ruling the nation.

Though there is no stipulating clause or legal theory concerning the hierarchy between laws in North Korea, this Commerce Act's effectiveness is lower ranked than the North Korea's Constitution Law.

As North Korea's Civil Act is the general law stipulating about the property, some contents of the business deal are contained in it.

The contents of the Commerce Act of the production, sales, transportation, goods for

the tour, the company, wholesale market and retail market, exchanging between the city and the rural community, can be regarded to contain the primitive subject of the material Commercial Law like the market system.

Although I think that there is no formal and normal Business Law in North Korea, we should try to review these objects there.

The chapter I, II of North Korea's Commerce Act contains the concept of the Socialistic Commerce, production ordering system, government's procurement of the product from the people, revolutionary volunteer service, directive system in the commerce, distribution of goods suitable to the level of Socialistic Commerce, the ultimate objective of supply for free, international trade and cooperation, preservation and supply of goods according to the people's demand, wholesale market's securing goods and the interregional exchange, normal supply of goods to the retailer, making production order paper, the planning of production, distribution and supply, good supplying contract and the duty of its fulfillment, food producing system founded on the raw material base, supply of the marine products, prior supply of the preserved goods concentrated on the account closing time in the Cooperation Farm, prior supply of the mining goods, supply of labour-protecting goods, self manufacturing of the children's clothes, securing and selling goods for the tourists, production, supply and transportation of the people's fuel, guarantee system of the daily goods, the establishment of the goods distributing system, supply of the spared goods in the period of the natural calamity, direct sale market's role, duty and prohibitions, transportation of goods and letters, prohibition of unlawful outward flow of goods and the abuse of official power, etc.

Key Words : trustees' duties, duty not to delegate, non-delegation rule, investment power, investment duty, delegates of trustees, trustees' liability for appointing and supervising delegates, diversification of trust property